
안전보건관리

에이치엘비

【조문별 찾아보기】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정의】	1
제4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2
제5조 【사고예방책임】	2
제6조 【안전·보건표지】	2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2
제7조 【조직의 구분】	2
제8조 【안전·보건관리 체제】	2
제9조 【안전·보건관계자 임명 등】	3
제10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제11조 【관리감독자】	3
제12조 【안전관리자】	4
제13조 【보건관리자】	5
제14조 【산업보건의】	5
제15조 【작업지휘자】	6
제1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6
제17조 【회의 등】	6
제18조 【심의사항】	7
제19조 【회의특】	7
제20조 【회의결과 등의 주지】	7
제3장 안전·보건교육	7
제21조 【교육의 구분】	7
제22조 【교육담당자】	8
제23조 【교육계획수립】	8
제24조 【책임】	8
제25조 【정기교육】	8
제26조 【관리감독자교육】	8
제27조 【채용시의 교육】	9
제28조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9
제29조 【특별안전·보건교육】	9

제30조 【교육강사】	9
제31조 【교육방법】	10
제32조 【교육관계 서류 보존】	10
제33조 【교육대상】	10
제34조 【교육주기 등】	10
제35조 【교육수강신청】	10
제4장 안전관리	11
제36조 【안전·보건관리업무 계획수립】	11
제37조 【안전·보건진단】	11
제38조 【사전인가 등】	11
제39조 【작업중지】	11
제40조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11
제41조 【성능유지】	12
제42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12
제43조 【안전인증】	12
제44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13
제45조 【안전검사】	14
제46조 【안전검사의 주기】	14
제47조 【안전검사결과 조치】	14
제48조 【점검 및 순찰의 책임】	14
제49조 【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15
제50조 【점검방법】	15
제51조 【점검결과 조치】	15
제52조 【안전기준】	15
제53조 【표준안전작업지침】	16
제54조 【안전수칙】	16
제55조 【위험물의 보관】	16
제5장 보건관리	16
제56조 【건강진단의 구분】	16
제57조 【건강진단 실시시기 등】	17
제58조 【진단결과 조치】	18
제59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18
제60조 【작업환경측정】	19
제61조 【측정결과의 조치】	19
제62조 【유해물질 취급부서】	19
제63조 【유해물질 표시】	19

제64조 【보건수칙】	19
제65조 【보호구착용 작업 등】	20
제66조 【작업복】	20
제67조 【보건기준 등】	20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21
제68조 【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21
제69조 【긴급조치】	21
제70조 【비상연락망】	21
제71조 【사고조사 및 보고】	21
제72조 【재해분석】	22
제7장 무재해운동	22
제73조 【무재해운동】	22
제74조 【추진기구】	22
제75조 【추진방법】	22
제76조 【무재해 목표일수】	22
제77조 【무재해운동 포상】	22
제8장 상 별	23
제78조 【표창】	23
제79조 【징계】	23
제80조 【상벌평가 기준 등】	23
제9장 보 칙	23
제81조 【안전·보건 제안】	23
제82조 【문서기록 보존】	24
제83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24
제84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24
제85조 【규정의 준수 등】	24
제10장 부 칙	24
제1조 【시행일】	24
【별표1】 안전·보건관리 체제	25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2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이치엘비(주) (이하 “회사”라 한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존을 도모하며 생산 능력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전 임직원에게 적용하며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도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대표이사”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이란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7. “사고”란 불안정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비정상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으로서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8. “안전관리”란 비능률적인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이다.
9.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 노동력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심한 영향을 주는 각종 조건을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해”란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1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2. “불안정한 행동”이란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성을 저하하는 행동을 말한다.
13. “불안정한 상태”란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를 말한다.

제4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회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 및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고예방책임】 회사는 사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최고경영자)에서부터 일선 작업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공동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며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써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일반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및 기타 안전·보건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 【안전·보건표지】 ①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규칙 별표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규칙 별표2와 같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 1 절 통 칙

제7조 【조직의 구분】 ①법상 회사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라인(계선)조직과 스태프(참모)조직 및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 구분한다.

②라인(계선)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둔다.

③스태프(참모)조직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둔다.

④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작업지휘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 소방대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건관리 체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별표1과 같다.

제9조 【안전·보건관계자 임명 등】 ①라인(계선)조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를 비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라인(계선)조직의 관리감독자는 회사의 조직 계통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③스텝(참모)조직은 영 별표4 및 영 별표6,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2 절 라인 (계선) 조직과 직무

제10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
11.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집행
12.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 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
13. 안전작업 표준 지침 작성 및 보완
1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로써 제7조제3항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1조 【관리감독자】 ①관리감독자는 법 제1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 안전관리자(안전대행 기관) 및 보건관리자(시화병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7. 불안정한 작업방법 개선
8. 불안정한 행동의 시정 지도
9.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0.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영 별표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 3 절 스텝 (참모) 조직과 직무

제12조 【안전관리자】 ①안전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회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수행 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이하 “지도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되 안전관리대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대행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토

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건관리자】 ①보건관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영별표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영별표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가 영별표6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회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업무를 시화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수행 할 업무는 지도감독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대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업무를 시화병원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시화병원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토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업보건의】 ①회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참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에 의한 자율고용)>

제15조 【작업지휘자】 ①회사에서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경험이 많은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
 2.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또는 내리는 작업
- ②제1항의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 ③작업지휘자는 제2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 4 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①회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③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담당자)
3. 보건관리자(시화병원 담당자)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8조 【심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제10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2조의 안전관리자, 제13조의 보건관리자가 수행할 직무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 달성
5.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시설·설비 등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관리 규정, 각종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변경
8.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9조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0조 **【회의 결과 등의 주지】**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사내방송
2. 사내보
3. 게시판 게시
4.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
5.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 1 절 통 칙

제21조 **【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책임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과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법 제13조, 법 제15조,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직위에 선임된 안전·보건관계자가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④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기타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다.

제22조 【교육담당자】 회사의 교육담당자는 안전 또는 보건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3조 【교육계획수립】 회사의 교육담당자는 연간 교육계획서를 매년 1월중에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책임】 ①전 직원은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또는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불참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에 불참 시에는 회사의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 절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25조 【정기교육】 ①회사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8의2와 같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관리감독자교육】 ①회사는 생산관련 부서의 직·조·반장급 이상 부장급의 직위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정기교육 외에 별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교육은 교육교재 및 강사 확보 또는 기타 사유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채용시의 교육】 ①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8의2와 같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중 동종업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을 4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회사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8의2와 같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제29조 【특별안전·보건교육】 ①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써 영 별표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8의2와 같다.

1. 규칙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규칙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중 특별교육대상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8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⑤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육강사】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은 규칙 제33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 담당자)
3. 보건관리자(시화병원 담당자)
4. 산업보건의
5. 관리감독자
6.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7.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1조 【교육방법】 회사는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집체교육 : 교육장 또는 식당 등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 회사내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교육실시자가 격지 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제32조 【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담당자는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실시자
3. 교육과정
4. 출석인원
5. 교육내용
6.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3 절 직 무 교 육

제33조 【교육대상】 회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제34조 【교육주기 등】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교육수강신청】 교육담당자는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주기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칙 별지제2호 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안 전 관 리

제 1 절 통 칙

제36조 【안전·보건관리업무 계획수립】 ①안전·보건업무 담당자는 매년 1월중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안전·보건관리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업무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하여 전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안전·보건진단】 ①회사는 법 제49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사전인가 등】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도급에 대한 인가가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2. 법 제38조에 따라 사전 허가가 필요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제39조 【작업중지】 ①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먼저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③모든 근로자는 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제40조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며, 그에 따른 기계·기구와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에는 날 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에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41조 【**성능유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40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①근로자는 제40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 절 안전인증 및 검사

제43조 【**안전인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 다. 절곡기
- 라. 크레인
- 마. 리프트
- 바. 압력용기
- 사. 롤러기
- 아. 사출성형기
- 자. 고소작업대

카. 곤돌라

타. 기계톱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나. 안전화
 - 다. 안전장갑
 - 라. 방진마스크
 - 마. 방독마스크
 - 바. 송기마스크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아. 보호복
 - 자. 안전대
 -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 카. 용접용 보안면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제44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3.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45조 【안전검사】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프레스
2.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3. 압력용기
4.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5.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④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

제46조 【안전검사의 주기】 제4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 부터 2년마다
2.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 등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 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제47조 【안전검사결과 조치】 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하여 안전검사기관에서 불합격통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완료되는 즉시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재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절 안전점검 및 순찰

제48조 【점검 및 순찰의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자기 소관의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49조 【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 및 보건업무 담당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최소한 관리책임자는 1일 1회 이상, 안전업무담당자는 1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전반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 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방법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TF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안전성 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점검방법】 점검자는 반드시 점검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되 점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 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지체 일상 점검 상태
-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51조 【점검결과 조치】 ①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계자를 경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부서장에게 발부하며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 조치한 후 즉시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담당자의 점검 결과 보고서는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중요사항 발견시는 직접 보고 가능)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③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 지시를 하고 작업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 5 절 안 전 기 준 등

제52조 【안전기준】 ①각 부서의 장은 회사 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308호 2008. 9. 18)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기준은 산업안전기준 내용 중에서 해당 작업장에 실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작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 【표준안전작업지침】 ①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 하여 해당 작업부서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준안전작업지침은 해당 관리감독자의 책임하에 제52조 안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거 해당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③작업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하는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때
3.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필요한 때

제54조 【안전수칙】 ①회사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업무 담당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③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해당 관리감독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안전수칙은 해당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절 위험물질의 취급 등

제55조 **【위험물의 보관】** ①회사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금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위험물 보관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건 관리

제 1 절 건강 진단

제56조 **【건강진단의 구분】** ①회사는 법 제43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제57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신체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②회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칙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규칙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③회사는 규칙 제98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⑤회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8조 【진단결과 조치】 ①회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개인표를 교부받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규칙 별지제22호(1) 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규칙 별지제22호(2) 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

③회사는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시화병원 담당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 절 작 업 환 경 측 정

제60조 【작업환경측정】 ①회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규칙 별표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시화병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61조 【측정결과에의 조치】 ①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회사는 제60조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 3 절 유 해 물 질 관 리 등

제62조 【유해물질 취급부서】 ①회사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7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 부서로 지정하고, 동 부서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부서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3조 【유해물질 표시】 보건관리업무 담당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64조 【보건수칙】 ①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해당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정·게시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절 보 호 구 등

제65조 【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케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유기용제 및 분진 취급 작업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9.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송기마스크
10.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1.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2.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②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고 부서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4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구입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④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해당 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⑤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⑥지급된 개인 보호구는 질병감염 우려가 없도록 다수의 근로자가 공용으로 사용케 해서는 안 되며, 개인 보호구 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 【작업복】 ①회사는 근로자에게 작업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적합한 작업모 및 작업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에는 규정된 작업복 이외에는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작업복은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67조 【보건기준 등】 ①회사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업무 담당자는 제1항의 보건기준을 기초로 작업자의 건강상 특히 필요한 곳에는 보건수칙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③보건수칙은 관계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작업자는 보건수칙을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68조 【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①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부서의 장과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안전업무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9조 【긴급조치】 ①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응급실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송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③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0조 【비상연락망】 회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1조 【사고조사 및 보고】 ①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업무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안전업무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안전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안전관리대행기관 담당자(직업성 질병 발생 시는 시화병원 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⑤사고 조사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업재해조사표)에 의거 조사한다.

⑥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안전업무담당자(직업성 질병 발생 시는 보건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72조 【재해분석】 ①안전업무담당자는 매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업무담당자는 매 익년 1월 중에 전년도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 다발 원인 및 부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관에 공고하여 전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무 재 해 운 동

제73조 【무재해운동】 회사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통합된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무재해운동 시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6호)에 의거 무재해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4조 【추진기구】 회사는 무재해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무재해추진위원회로 하여 무재해운동을 총괄 관리토록 하고 각 부서별로 무재해운동 추진반을 편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75조 【추진방법】 ① 무재해운동 추진기법은 5C운동이나 위험예지 훈련을 적용하여 활용하되, 각 부서의 실정에 맞는 기법으로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업무담당자는 회사 전 직원이 보기 쉬운 장소에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하고 무재해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76조 【무재해 목표일수】 회사의 무재해 목표일수는 사업장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1배수의 목표 일수를 300일로 한다.

제77조 【무재해운동 포상】 ① 무재해운동 추진반 단위로 안전보건공단 무재해 포상 기준 적용에 따라 포상한다.

② 제1항의 포상 이외에 유공자에 대한 개인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8 장 상 별

제78조 【표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안전 보건 강조기간 행사 중에 표창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 제안이 채택된 직원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
3. 안전·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직원

제79조 【징계】 ① 회사는 법과 법이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직원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 시킨 직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

제80조 【상별평가 기준 등】 ①표창 또는 징계 요구 시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손실금액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 실적
 3. 무재해목표 달성 실적
 4. 안전수칙 준수 상태, 교육 및 안전활동
 5. 직원의 참여 의식 및 이행 상태
 6.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②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사내 상별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81조 【안전·보건 제안】 ①회사는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취합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제안함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 【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3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관련 다른 법률에 의한 방화 관리규정 및 전기보안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84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5조 【규정의 준수 등】 ①회사 내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회사는 이 규정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전 직원이 알게 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